

정 관

2020.08.12. 제정
2021.02.25. 개정
2021.06.18. 개정
2021.12.16. 개정
2022.10.18. 개정
2023.02.09. 개정
2023.11.16. 개정
2024.02.27. 개정

GCSC



김해시스포츠클럽

Gimhae City Sports Club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 김해시스포츠클럽(이하 “스포츠클럽”이라 한다)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Gimhae City Sports Club(약칭 G.C.S.C)라 한다.

제2조(소재지) 스포츠클럽의 사무국은 경상남도 김해시에 둔다.

제3조(목적) ① 스포츠클럽은 지역을 거점으로 다세대·다계층 시민에게 다양한 생활체육 종목·프로그램·지도자를 제공하여 지역주민 누구나 손쉽게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고, 이를 통한 지역주민의 심신발달 및 우수 선수 발굴 등의 성과로 지역사회 생활체육과 엘리트체육이 연계 발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전 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은 모집하는 회원의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사업계획 및 예산안 작성에 있어 지역주민 다수의 이익제공 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 ① 스포츠클럽은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시민의 운동 프로그램 참여 등 정기적인 체육활동의 시행
2. 연간계획에 따른 자체 스포츠 경기대회 개최
3. 타 기관이나 단체가 주최하는 경기대회 참가에 관련된 사업
4. 사회의 청소년 및 성인의 체육활동 보급과 관련된 사업
5. 시민의 건강·체력 증진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의 운영
6. 건전한 청소년 육성 및 우수선수 발굴·양성과 관련된 사업
7.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 운영
8. 기타 스포츠클럽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사업 경비충당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설치 및 의무)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 제1항 각호의 사업을 조사·연구·심의하고 이사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스포츠클럽은 엘리트 자원 확보를 위한 선수반을 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그 실비 또는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의 목적사업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회원여부·출생지·종교

· 직업·학력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부당하게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7조(체육회와의 관계) ① 체육회는 대한체육회와 경상남도체육회를 지칭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2. 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할 권리

③ 스포츠클럽은 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진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결산서를 체육회에 보고할 의무
2. 체육회의 스포츠클럽 운영성과 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

④ 스포츠클럽이 제3항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할 경우,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소속 임원 포함)에 대하여 경고, 지위 박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⑤ 체육회는 스포츠클럽에 대한 권리와 의무 및 지도 감독에 필요한 사항을 시·군·구 체육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8조(시·군·구체육회와의 관계) ① 스포츠클럽은 사무소 소재 시·군·구체육회에 가입하고 그 회원단체가 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은 가입 시·군·구체육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시·군·구체육회의 회원으로서 의무
2. 스포츠클럽 운영성과평가 및 지도감독 등 필요한 제반사항에 적극 협조할 의무

제2장 회 원

제9조(회원가입)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별도의 자격요건이 없다. 회원 희망자는 소정의 입회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회원으로의 자격을 가진다.

제10조(회원의 모집) ① 회원은 인터넷·지역회보·기관지·언론매체 등을 통한 공개적인 방법으로 모집한다.

② 회원 모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회비)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소정의 가입비 및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가입비 및 회비의 기준과 납부방법 등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이 경우 유소년회원 및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12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이사회에 의견을 제기하는 방식으로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유소년회원과 청소년회원은 성인회원과 달리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참여할 권리

를 제한받을 수 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규정 및 제 규정의 준수
2. 운영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
3. 회비의 납부
4. 스포츠클럽에서 시행하는 다양한 공익사업 참여 등

제14조(회원의 탈퇴) 스포츠클럽에 가입한 회원은 탈퇴신고를 함으로써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5조(회원의 상벌)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포상할 수 있다.

② 스포츠클럽의 회원으로서 스포츠클럽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스포츠클럽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거나 제13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의결을 거쳐 자격박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회원의 상벌의 종류, 절차 기타 상벌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임 원

제1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스포츠클럽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 장 1 명
2. 부 회 장 3 명 이하
3. 이 사 35명 이하
(회장·부회장을 포함한다)
4. 감 사 2 명

제17조(임원의 선출방법) ① 스포츠클럽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하되, 2명 이상이 입후보한 경우로서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득표자 2명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다수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한다.

② 김해체육회 사무국장, 김해시청 체육지원과장, 김해교육지원청 평생체육과장 및 스포츠클럽 사무국장은 스포츠클럽의 당연직 이사로 지명한다. 단, 당연직 이사는 등기하지 않는 비등재 이사로 한다.

③ 부회장과 이사는 스포츠클럽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인사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회장을 제외한 이사의 임기 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이를 보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차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김해시체육회장이 지명한 1명을 포함하여야 하며, 감사 2명 중 1명은 공인회계사로 한다.

제18조(임원의 임기 및 해임) ① 회장은·부회장 및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당연직 이사의 재임기간은 선출당시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③ 임기의 기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④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증원으로 인하여 새로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기존 임원의 임기와 함께 종료한다.

⑤ 임원의 임기가 만료될 경우에도 후임자가 취임하기까지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스포츠클럽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스포츠클럽의 업무에 관한 사항 및 대의원 구성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⑤ 임원이 스포츠클럽의 직무 수행 이외의 범죄사실로 공소 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그 직무는 정지된다.

⑥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스포츠클럽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 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시·군·구체육회 및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0조(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운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회장의 직무대행) 회장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부회장 전원이 직무를 대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2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스포츠클럽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라 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4.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가 주최·주관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부터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5.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9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체육단체 및 시도·시군구 종목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이 종료되지 아니한 사람
(다만, 승부조작, 편파판정, 폭력·성폭력, 횡령·배임의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②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임원이 될 수 없다.

제4장 총 회

제23조(대의원) ① 스포츠클럽의 대의원은 종목별 6개월 이상 회원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로 구성한다.

② 스포츠클럽의 임원은 대의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③ 대의원의 수는 30명 이내로 하며 종목별 대의원 파견 인원은 종목별 가입한 회원수에 비례하여 스포츠클럽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④ 종목별 회원은 정기총회 개최 15일전까지 대의원 지원신청서를 이사회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⑤ 대의원의 자격은 해당 정기총회로부터 다음 정기총회 개최 직전까지로 한다.

⑥ 대의원은 제2항 단서의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인으로 하여금 총회에 참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없다.

제24조(의결사항) ① 총회는 스포츠클럽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 선출·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의 승인
4.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보고의 승인
5. 동호회의 제명결정 승인
6.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② 총회는 통지된 안전만을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그 외의 안전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25조 (소 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한다.

② 총회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전·일시 및 장소를 명확하게 기록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소집요구일 부터 15일 이내에 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 또는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7조 (의장의 표결권) ① 총회의 의장은 스포츠클럽 회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의장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워 위임을 한 경우에는 대의원 중에서 임시의장을 선출할 수 있다.

제28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은 자신의 취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이나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서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29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총회의 의사표결은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대의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0조 (서면결의) 총회는 서면결의로 대신할 수 없다.

제31조 (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당연직 임원을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②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발의되고 재적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즉시 해임된다.

④ 해임안이 의결되면 총회는 즉시 신임임원을 선출하여 스포츠클럽의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제32조 (임원의 발언권)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질문에 응답할 수 있다.

제33조 (의사운영 규정) 총회의 의사운영에 관한 규정은 총회에서 이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장 이 사 회

제34조 (구 성) ① 이사회는 회장·부회장·이사로 구성하며, 스포츠클럽의 최고 집행기관이다.

제35조 (기 능) ①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4.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 발의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입회·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의 조정 및 통할에 관한 사항
8. 총회 부의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9. 제 규정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0. 본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의 중요사항

②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제36조 (소 집) ①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한다.

② 회장의 유고시 이사회 의장은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한다.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5일전에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통신수단 등에 의해 심의 및 결의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37조 (소집의 특례)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9조제6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는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10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38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는 의사는 본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출석한 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제17조 2항의 당연직 이사는 비등기 이사임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정족수 등을 판단할 때 산입된다.

제39조 (긴급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0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회의에 올릴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서면결의로 이사회 의결을 대신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과반수가 정식으로 이사회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른다.

② 서면결의는 내용증명 우편의 방식과 방문 방식에 의하며 모든 재적이사에게 회신일을 지정하여 의안을 송부하고 회신일까지 재적이사 과반수의 회신이 있는 경우로서 회신한 이사 과반수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 의결된 것으로 본다.

③ 회장은 서면결의의 시행사유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의2(운영위원회) ① 회원 및 종목별 관리·운영 등 본 정관에서 규정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회에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회장 및 이사회가 추천하는 약간 명의 이사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는 부회장 중 1명이 된다.

③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6장 사무국

제41조(사무국) ① 회장의 지시를 받아 스포츠클럽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사무국장과 직원은 공개 채용을 하여야 하며, 스포츠 경영관리사 등 공인 자격 등급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다. (단, 특별채용 인정사유는 스포츠클럽 사업지침 및 클럽 사무국 인사규정에 명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③ 사무국장은 채용 후 회장이 임면하고 이사회 보고를 한다.

④ 스포츠클럽 전체의 경영관리를 총괄하는 사무국장, 지도활동을 하는 체육지도자, 행정업무를 하는 사무국 직원에 대해서는 클럽 재정 및 운영규정에 부합되도록 인력을 운용하여야 한다.

⑤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7장 지도자

제42조(채용) ① 스포츠클럽의 지도자는 공개 채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스포츠클럽 운영을 위하여 특별한 경력이 있는 사람의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채용 심사를 거쳐 특별채용 할 수 있으며, (단, 특별채용 인정사유는 스포츠클럽 사업지침 및 클럽 사무국 인사규정에 명시한 경우로 한정한다.) 특별채용 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43조(구분) ① 지도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당 종목 자격증 소지자를 선발하여야 하며, 국가체육지도자(스포츠지도사(전문, 생활, 건강, 장애인, 유소년, 노인)) 자격종목은 자격소지자를 필히 선발하여야 한다.

② 국가대표 선수 또는 시·도 대표선수활동 경험자에 대해서는 지도자 선발 시 우대할 수 있다.

제8장 종목선정 및 운영

제44조(종목 선정 기준) ① 스포츠클럽의 종목은 5종목 이상으로 한다.

② 운영종목을 변경 또는 확대하기 위해서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진행하고,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4조의2(종목별 운영) ① 스포츠클럽의 회원은 가입할 때 자신이 소속될 종목을 표시하여야 하며, 중간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② 회원은 복수의 종목을 선택할 수 있다.

③ 클럽내 운영 중인 각 종목별로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대표자 선출에 관한 방법, 임기 등은 각 종목별 실정에 따라 정한다.

④ 각 종목은 소속된 회원의 활동실적을 관리 유지하여야 한다.

제45조(체육시설) 체육시설은 김해시로부터 위탁받은 시설 중심으로 하며, 필요 시 공공체육시설 및 학교체육시설 등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최소한의 범위로 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제46조(참여방법) ① 청소년회원이 학생일 경우, 정규 학교 수업에 반드시 참석하여야 하며, 방과 후 또는 주말을 이용하여 스포츠클럽 활동에 참여한다.

② 종목별 운동 프로그램 및 일정은 별도로 정한다.

제47조(대회) ① 선수활동 및 대회참가를 위해 지역교육청 및 학교와 협력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종목별로 연 1회 이상 외부 대회에 참가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③ 스포츠클럽은 교류대회를 통해, 스포츠클럽의 운영 프로그램의 성과를 평가하고 회원 간 친목을 도모하며 우수선수 발굴·양성의 기반을 확충하여야 한다.

④ 스포츠클럽은 체육회가 주최하는 전국스포츠클럽교류대회에 참가하여 전국의 스포츠클럽들과 교류하여 상생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8조(스포츠클럽종합정보시스템 사용) 스포츠클럽은 체육회가 제공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하여 이를 통해 운영 및 활동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9조(보험가입) ①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스포츠활동 중 발생하는 운동손상에 대처하고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회원이 외부 대회에 참가하거나 전지훈련에 참가할 경우에는 이동 중에 발생한 상해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50조(회원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회원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야 하며, 재산의 훼손 또는 망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산 관리 대장을 비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회원의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하여야 하며, 개인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아니 된다.

③ 경기기록 및 지도 일지 등 주요 사항은 기록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홍보) 스포츠클럽은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회원 프로그램과 동정 등을 인터넷 및 각종 매체를 통해 홍보하여야 한다.

제9장 재산 및 회계

제52조(재산의 구분) ① 스포츠클럽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기본재산으로 한다.

1. 설립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부동산
 3. 기 금
 4. 보통재산 중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에 편입되는 자산
- ② 스포츠클럽의 재산 중 제1항 각호 외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 ③ 기부금품은 기부하는 사람의 지정에 따른다.
- ④ 스포츠클럽의 기본재산은 "별표"와 같다.
- ⑤ 기본재산은 연 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3조 (재 정) 스포츠클럽이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경비는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1. 회원의 회비
2.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금
4.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5. 공공단체의 지원금·보조금
6. 사업수익금
7. 그 밖의 수익금

제54조 (잉여금의 처리) 스포츠클럽의 매회계년도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순으로 처리한다.

1. 이월결손금의 보전
2. 차기 회계년도 목적사업비로 이월
3. 기본재산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적립

제55조 (재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의 기본재산을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담보로 제공

하거나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 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의 재산관리에 있어 그 밖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③ 스포츠클럽의 재산관리에 있어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외의 것은 국유재산법 및 물품관리법의 일반적인 관리의무 규정을 준용한다.

④ 스포츠클럽의 모든 회계처리는 국고보조금 관리 규정에 의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리 정산하여야 한다.

제56조 (재산의 대여 및 사용) ① 스포츠클럽의 재산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제외한 다음 각 호에 해당 하는 사람에게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그 외의 경우에도 적절한 대가 없이는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스포츠클럽의 임직원
2. 스포츠클럽 설립자 또는 임원과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정한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임원으로 있는 법인
3. 그 밖의 스포츠클럽의 재산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57조 (예산 및 결산의 승인) ① 스포츠클럽의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회장이 매회계년도 마다 편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2개월 이내에 체육회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자금은 국고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집행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결산서는 해당 결산서 기준일로부터 2년간 보관한다.

③ 스포츠클럽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의결 후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7조의 2 (사업시행의 특례) ① 제5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고보조금이나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으로서 조기 시행이 불가피한 사업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이전에 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집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사업은 그 규모를 최소화하여야 하며, 그 집행내용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 (회계연도) 스포츠클럽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59조 (기금 및 적립금) ① 스포츠클럽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특별한 목적을 위한 기금을 조성하거나 적립금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 및 적립금은 특별회계로 한다.

제60조 (회계감사) ①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감사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체육회의 감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60조의2 (경영공시) ① 스포츠클럽은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등을 공시한다.

②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스포츠클럽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61조(예산편성원칙) ① 경상비의 예산 편성 및 지출을 최소화 한다.

② 예산편성은 당해 사업년도의 특성, 예산의 범위, 종목별 특성, 각 사업의 목적 및 대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한다.

제62조(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 ①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으로 교부된 예산의 과목간 전용은 금지된다. 다만,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 후, 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를 거쳐 체육회의 예산변경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체육회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요구할 경우, 예산집행계획 및 현황을 포함하여 스포츠클럽 운영실태(종목·인원·성과 등) 및 전반적인 진행사항과 추진일정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금에 대한 집행잔액은 정산 확정 후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제63조(지방자치단체 지원금) ① 스포츠클럽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 지원금의 운용에 대해서는 제6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4조(기부금, 찬조금 등 그 밖의 수입) ① 스포츠클럽은 당해 지역 기업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기부금 및 찬조금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기부금, 찬조금 등 그 밖의 수입 및 회원의 회비 등의 자체 수익금의 30% 이상을 매년 자체 적립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다만, 초과집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장의 승인을 거쳐 사용하고, 추후 차기 이사회 및 총회에 사용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제10장 보 칙

제65조(해산) 스포츠클럽은 주무관청의 설립허가 취소 또는 재적대의원 4분의 3 이상의 해산결의로 해산한다.

제66조(해산시 잔여재산의 귀속) 스포츠클럽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한다. 다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 귀속하도록 한다.

제67조(정관 변경) 정관변경은 이사회 의결 또는 총회의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 하며, 총회의 출석대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규정의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한 것 외에 스포츠클럽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 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69조(평가)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체육회는 스포츠클럽 운영성과를 매년 평가하며, 그 결과를 각 스포츠클럽에 통지한다. 스포츠클럽은 평가에 필요한 자료 제출 및 현장실사 등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당시 임원 및 임기)

초대임원의 임기는 정관 18조에 의거 4년으로 하고 정부 회계기준일에 맞추어 2025년 정기총회 전일까지로 한다.

[별표]

기본재산목록

종별(용도별)	수량(m ²)	금액	비고
계	-	50,000,000원	
기본재산(현금)	-	50,000,000원	